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등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마련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재해율·재해 강도 등을 감안하여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하였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하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마련

건설공사에서 도급하는 자의 책임 또는 약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에

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3〉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의 세부기준 마련
그동안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은 자체적으로 인력·시설 등 요건만 갖추면 업무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인력·시설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된 위탁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교육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등으로 하였다.

〈4〉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기준 변경 등

그동안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망자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변경된다.

이는 현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휴업 3일 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기준(휴업 4일 이상)이 달라 사업장에서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 고용부도 미제출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지도하고, 산재발생보고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조치이다.

또한, 신설된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 규정을 알지 못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기간 내에 미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 보고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철거·해체 작업시 안전·보건 정보 제공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개조·분해뿐 아니라 철거·해체작업도 이를 도급할 때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작년에 발생한 근로자 수은중독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철거·해체 할 때에도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 '15.3월, 근로자 수은중독 사고의 경우 협력업체가 노후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작업도중 발생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한 것으로, 노·사 관계자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공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연구원이 75건의 산업안전보건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보고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결과물로 산업재해예방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분야별로는 정책연구, 안전연구, 직업건강연구, 직업환경연구, 화학물질 연구 등 5개 분야이며, 정책연구 분야는 24건의 연구보고서가 있으며, 안전연구 분야는 9건, 직업건강연구 분야는 14건, 직업환경연구 분야는 11건, 화학물질연구 분야는 17건이 제시되어 있다.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국제비교」, 「주요 외국의 안전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산재예방제도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연구 분야에서는 「가설 기자재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등의 보고서로 산업현장 안전성 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업건강연구 분야에서는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확대를 위한 연구」, 직업환경연구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작업환경측정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적 분석」, 화학물질연구 분야에서는 「발암성 물질의 위험성평가 기법 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현장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

으로, 안전연구 분야의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서의 감전 위험성 감소대책 연구」의 경우,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특허출원 중에 있는 등 4건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현장에 적용해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단 연구원은 75건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산업 안전보건연구 요약집」을 발간하고, 연구원 홈페이지 (<http://oshri.kosha.or.kr>) '연구보고서 검색 및 조회 서비스'에서 연구보고서의 본문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확대 운영한다

- 산재근로자의 집중·전문 재활치료 기회 높여 -

근로복지공단(이재갑 이사장)은 특화된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기존 34개소에서 올해 53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활인증의료기관은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재활치료 부문의 별도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있으며 발병일이나 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의 '뇌혈관·척추·관절질환' 산재환자에게 일반 건강보험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수중운동 치료·재활심리상담 등 26종류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뇌혈관·척추·관절질환'의 산재환자는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진료계획이 인정되면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은 산재 환자수는 약 3,000명에 달한다. 공단은 재활인증의료기관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를 선별하여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산재환자에게 전원을 안내하고, 재활 물리치료 항목에 대해 20%를 추가 가산하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시범 재활치료 중 효과성이 검증된 재활치료팀 의료 등 9종의 재활치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포

함시켜 산재근로자들이 더 많은 재활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의 직업복귀율이 77%로 일반 환자의 직업복귀율 61%보다 높게 나타나고, 뇌혈관 등 신경계통의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등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단은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34개로 운영하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올해 53개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6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 이외의 시범 재활치료를 현재 26종류에서 마비환자에게 로봇보행 치료 등 선진 재활치료기법까지 계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 8개 직영병원은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을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하는 통합재활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자병원으로서 보다 질 높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